

노후 슬레이트 교체작업 중 추락



제조업

공장 지붕보수공사 용역을 받아 피재자가 노후 슬레이트 교체작업 완료 후 슬레이트 교체부분에서 약 30m 떨어진 가마연돌 보수예정 장소로 이동하던 중 노후 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10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







- 1 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
 - 슬레이트,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후 작업 실시
- 2 추락방지용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
 - 높이 2m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, 안전대 등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



작업발판 설치

送回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(보호구의 지급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(추락의 방지)
- 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(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)



노후 슬레이트 교체작업 중 추락

지붕 위에서 작업 시에는 추락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.

